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
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개정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『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』(법률 제20944호, 2025. 4. 22. 공포, 2026. 4. 23. 시행)에 따라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수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, 안전점검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사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(안 제8조제1~3항 개정)

나.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이행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(안 제11조제2~4항 개정)

다.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각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수정(안 제12조 개정)

라. 수중레저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처리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(안 제13조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앞의 “제4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보칙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해양경찰청장”으로, “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”을 “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나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다목1) 및 2)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각각 “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8조(안전점검의 기준·절차 등)	제8조(안전점검의 기준·절차 등)
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	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수시 안전점검: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
②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	② <u>해양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(年度)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	③ <u>해양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11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① (생략)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<신설>

제12조(권한의 위임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13. (생략)

제13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

제11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해양경찰청장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해양경찰청장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 해양경찰청장-----
-----.

<삭제>

제5장 보칙

제12조(권한의 위임) 해양경찰청장-----
----- 해양경찰서장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

<u>방해양수산청장</u>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	<u>경찰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--	--

별표1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1조제1항관련)

현행	개정안
1. 일반기준 가. 생략 나.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 1)~3) 생략 다.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 1) ~2) 생략	1. 일반기준 가. 현행과 같음 나. <u>해양경찰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) ~3)현행과 같음 다. <u>해양경찰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) ~2) 현행과 같음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 -6186